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06
----------	------

2018년 4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3월 5일 김혜련 의원(찬성 24명)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8일
3. 상정일자 :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4월 3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혜련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5년 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시민의 다문화수용도 등을 계획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

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객관성과 과학성이 담보된 현황조사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 방안과 제도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2 주요사항 검토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결과 반영 (안 제6조제5항 신설)

-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6조(시책사업 추진) ⑤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2016)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 80%가 일자리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혼인귀화자는 비수도권에 46.7%가 거주하고 있는 등 지역별 외국인주민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주민유형별 맞춤형 생활정착 지원 제도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¹⁾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의 공식적인 외국인주민²⁾ 수는 (조사 기준이 다른 첫째 제외) 2007년 20만 7천여 명이었으나,
 -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주민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2016년 현재 기준 40만 4,037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음.
- 특히 구별 평균 외국인주민은 약 1만 6천여 명 수준이나, 외국인주민이 밀집하면서 일부 자치구에(구로구 4만8천여명, 영등포구 5만 5천여명, 금천구 2만 9천여명, 관악구 2만 9천여명 등)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지역주민과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새로운 지원정책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주민의 욕구와 정책 수요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1) 하혜영(2016.4),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보는 이슈』, 제52호, 국회입법조사처.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2006~2016)>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외국인	비율
2006	10,167	149	1.5
2007	10,200	207	2.0
2008	10,207	260	2.5
2009	10,219	335	3.3
2010	10,208	336	3.3
2011	10,313	366	3.6
2012	10,250	406	4.1
2013	10,195	396	3.9
2014	10,144	415	4.1
2015.1.1	10,103	458	4.5
2015.11.1	9,904	408	4.1
2016	9,806	404	4.1

주 : 1. 2006년 최초 조사 시에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만 조사(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은 미포함)

2. 기준에 1월 기준에서 2015년부터 11월 기준으로 변경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KOSIS DB.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현황(2016)>

(단위 : 명)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404,037	11,325	11,312	17,080	12,151	20,314	18,512	8,081	14,247	6,197	3,985	6,449	8,065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3,436	13,360	8,218	11,962	48,279	29,660	55,427	18,033	29,270	8,292	9,762	12,562	8,058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실행계획은 비전이나 전체적인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과 달리, 매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으로 객관적·실증적인 통계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수요를 반영함.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체계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행계획에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됨.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개정안에서 시행계획에 현황조사 결과 반영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현황조사 실시는 시장의 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항간에 일부 상충되는 점을 상쇄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5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6
----------	------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5일

발 의 자 : 김혜련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성언, 김경자(양천),
김기대, 김동욱, 김동윤,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정태, 김제리,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유광상,
유 용, 이병해,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홍순,
최영수, 최관술 의원(24명)

1. 제안 이유

서울시는 5년 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시민의 다문화수용도 등을 계획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 ④ (생략)</p> <p>〈신설〉</p>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p>